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84,552,393	8,536,572
일반회계	273,469,778	8,204,093
특별회계	11,082,615	332,478
기타특별회계	11,082,615	332,47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92,633	56,779
의료급여특별회계	878,437	26,353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376,000	11,280
주택사업특별회계	195,511	5,865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229,800	6,894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2,530,701	75,921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375,000	11,250
장흥담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919,026	87,571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1,558,298	46,749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27,209	3,81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93,76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